

경운대학교 명예총장에관한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 발전에 관하여 전임총장의 경륜을 계속 활용하기 위하여 경운대학교에 명예총장을 둘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 명예총장이라 함은 경운대학교의 전임총장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추대한 명예총장을 말한다.

제3조(기능) ① 명예총장은 경운대학교의 장·단기발전계획의 수립 등 대학발전에 관련하여 총장에게 조언하고 자문에 응한다.

② 명예총장은 이사장이나 총장이 위탁하는 업무를 처리 할 수 있다.

제4조(예우) ① 명예총장은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받는다.

② 명예총장이 학교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 할 경우, 각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.

③ 명예총장에게 공무활동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